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9도2003 사기
피 고 인 피고인
상 고 인 검사
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
담당변호사 김종숙
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노3252 판결
판 결 선 고 2019. 12. 24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

대법관 민유숙 _____